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판결

사 건 2001재누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임그루 (●●●●●●●●)

재심원고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남성한빛아파트 102동 1904호

송달장소 경북 울진읍 읍내리 596-3 한통사택 A동 103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재심피고 소송수행자 이미경, 김종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변경 전 상호; 한국전기통신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용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9. 7. 선고 2000누6383 판결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5. 12. 선고 99구23983 판결

변론종결 2004. 4. 30.

판결선고 2004. 5. 14.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9. 7.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99부해246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부당징계철회 및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을 다 인정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8. 10. 2. 체신부 공무원(기술과 시험계 통신기술시보)으로 채용된 후 1997. 9. 8.부터 참가인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영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1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무단조퇴를 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무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단조퇴 등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담당 과장에게 항의를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11. 참가인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21. 기각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4. 2. 신청을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같은 해 7. 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9. 8.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2. 5. 1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9.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1. 1. 8. 대법원 2000두8004호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①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에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같은 항 4호에 정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③ 같은 항 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④ 같은 항 10호에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각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동관 _____

 판사 오석준 _____

 판사 한숙희 _____

정본입니다.

2008 11 1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인]